

● **환경부고시 제2022-283호**

「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전기·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특정관리제품인 태양광패널을 재활용해야 하는 양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조정계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12월 30일

환경부장관

2023년도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조정계수

조정계수는 0.25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고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